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uncil

- ▶ 2009. 6. 30(화) 배포
- ▶ 총 6쪽

## 보 도 자 료

- ▶ 사무국 이재준 사무국장
- ▶ 정명숙 담 당

TEL : 02)541-1493  
 E-MAIL : mwc@molab.go.kr  
 FAX : 02) 541-1496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극적 타결

- 시간급 4,110원, 2,566천명 근로자 혜택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6.28(일) 오후부터 6.30(화) 새벽까지 3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10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시간급 110원 인상)으로 2.75% 인상하는 공익안에 노사위원이 합의하여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8,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8,860원이다.
-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임금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수혜대상 근로자의 수는 '09년 2,085천명에서 '10년 2,566천명, 영향률은 '09년 13.1%에서 '10년 15.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당초 경영계는 '3,770원(-5.8% 인하)'를, 노동계는 '5,150원(28.7%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삭감안을 제시하여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6월 한 달간 진행된 심의과정에서도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난항이 계속되었다.
-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사양측에서 총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공익위원들이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적극 노력한 결과 2010년 최저임금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된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7월 중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운용한 후 8. 5일까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참고>

1.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2. 2010년도 최저임금결정 경과
3. 최저임금 심의·의결 절차

<참고자료 1>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단위 : 원, 개소, 천명, %)

연 도	적 용 업 종	금액(시간급)	적용대상사업체	적용대상근로자	수혜근로자	영향률	
'10	1명이상 전산업	4,110	3,189,181	16,103	2,566	15.9	
'09	1명이상 전산업	4,000	3,262,925	15,882	2,085	13.1	
'08	1명이상 전산업	3,770	3,224,381	15,351	2,124	13.8	
'07	1명이상 전산업	3,480	3,204,809	14,968	1,784	11.9	
'05. 9. ~ '06. 12.	1명이상 전산업	3,100	3,189,890	14,584	1,503	10.3	
'04. 9. ~ '05. 8.	1명이상 전산업	2,840	3,187,916	14,149	1,245	8.8	
'03. 9. ~ '04. 8.	1명이상 전산업	2,510	3,131,963	13,631	1,035	7.6	
'02. 9. ~ '03. 8.	1명이상 전산업	2,275	3,046,554	13,216	849	6.4	
'01. 9. ~ '02. 8.	1명이상 전산업	2,100	1,100,768	7,152	201	2.8	
'00. 9. ~ '01. 8.	5명이상 전산업 ( - '00.11.23 )	1,865	317,266	5,367	98	1.8	
	1명이상 전산업 ( '00.11.24 ~ )		1,017,146	6,692	141	2.1	
'99. 9. ~ '00. 8.	5명이상 전산업	1,600	199,272	5,031	54	1.1	
'98. 9. ~ '99. 8.	10명이상 전산업	1,525	118,359	5,136	23	0.4	
'97. 9. ~ '98. 8.	10명이상 전산업	1,485	128,812	5,325	124	2.3	
'96. 9. ~ '97. 8.	10명이상 전산업	1,400	122,351	5,240	127	2.4	
'95. 9. ~ '96. 8.	10명이상 전산업	1,275	117,658	5,381	103	1.9	
'94. 9. ~ '95. 8.	10명이상 전산업	1,170	112,374	4,864	103	2.1	
'94. 1. ~ '94. 8.	10명이상 전산업	1,085	103,774	4,916	102	2.1	
'93	10명이상 전산업	1,005	98,695	5,045	228	4.5	
'92	10명이상 전산업	925	88,771	4,620	393	8.5	
'91	10명이상 전산업	820	82,923	4,556	393	8.6	
'90	10명이상 전산업	690	78,016	4,386	187	4.3	
'89	10명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600	39,977	3,053	328	10.7	
'88	10명이상 제조업	1그룹	462.50	34,984	2,267	94	4.2
		2그룹	487.50				

주 : · 전체 근로자 기준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정된 수치임  
· 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저임금근로자수(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임)  
·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참고자료 2>

최저임금결정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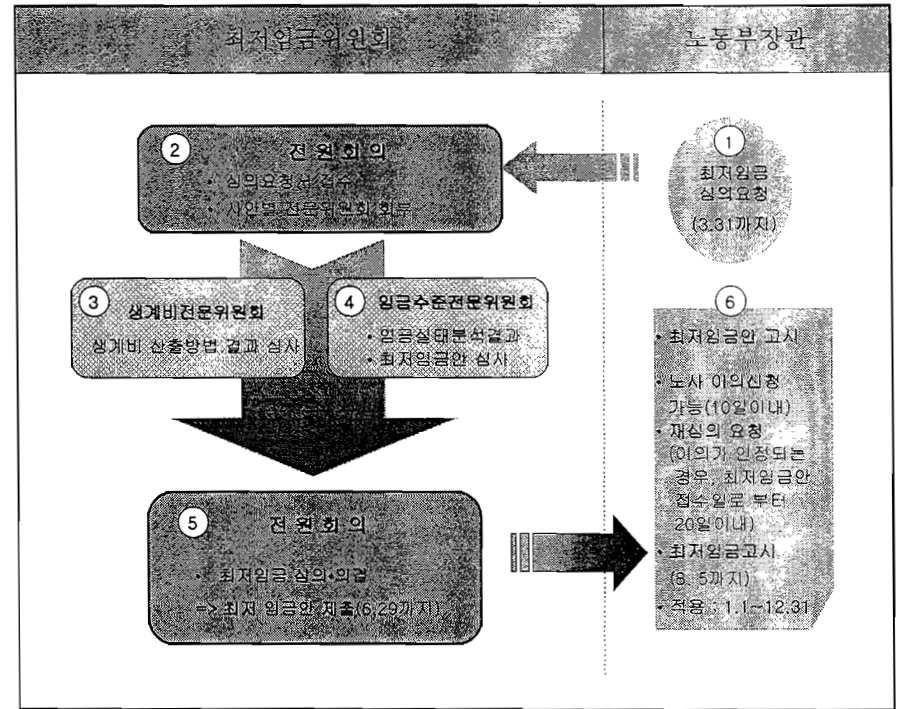
- 심의요청서 접수 : '09. 3. 31.
- 심의기간 : 요청일로부터 90일('09. 4. 1 ~ 6. 29)
- 제출기한 : '09. 6. 29(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내역

(단위 : 원, %)

회의	안 제시 차 수	근로자		사용자		비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제2차 전원회의 (4.3)	심의요청서 접수	-	-	-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부 -요구안 제출 안내(임금수준위)
2차 임금수준 (5.29)	최초 요구안	5,150	28.7	3,770	-5.8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전산업 적용, 시간급 고시 전원회의에 보고 의결
4차 전원회의 (6.5)	상정	5,150	28.7	3,770	-5.8	-결정단위 및 사업종류별 적용 심의 의결 →전산업 적용, 시간급 고시
5차 전원회의 (6.12)	1차	4,916	22.9	-	-	
6차 전원회의 (6.19)	2차	4,916	22.9	3,800	-5.0	
"	3차	4,800	20.0	3,840	-4.0	
7차 전원회의 (6.25)	4차	4,600	15.0	3,920	-2.0	
8차 전원회의 (6.28)	5차	4,520	13.0	3,940	-1.5	
"	6차	4,480	12.0	3,980	-0.5	
"	7차	4,390	9.75	3,990	-0.25	
"	8차	4,360	9.0	-	-	
"	9차	4,280	7.0	4,000	0	
"	공약안	하한선 0.4 ~ 상한선 4.6				
(6.30)	10차	4,185	4.6	4,015	0.4	
"	11차	4,170	4.3	4,020	0.5	
"	12차	4,160	4.0	4,035	0.9	
"	13차	4,155	3.9	4,045	1.125	
"	공약안	4,110(2.75)				공약안에 찬성

<참고자료 3>

최저임금 심의·의결 절차



-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 ②, ③, ④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 (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 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⑥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